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고 령 군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05
----------	-----

제출일자 : 2000년 8월 28일

제출자 : 고령군수

1. 개정이유

자치화, 정보화에 대비 효율적 자치체제 정비와 경제, 사회환경에 부응한 생산적 지방행정 구현을 위해 과의 명칭과 사무를 현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군정을 추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제1장 총칙 : 목적, 실·과·소장의 직급을 규정

나. 제2장 본청 : 실·과의 설치 및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

다.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 보건소,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설치, 소장 및 분장사무

제2절 : 농업기술센터의 설치, 소장의 직급, 소관사무 및 농민상담소설치 근거규정

라. 제4장 사업소 : 고령군수도사업소, 고령군환경위생사업소의 소장의 직급 규정

바. 제5장 읍·면 : 읍·면의 설치, 직무, 읍·면장의 직급 규정

3. 내 용 : 불 임

4. 신·구조문대비표 : 없 음

5. 기타 참고사항 :

3. 내 용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내지 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 과장의 직급 등) ①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 과장 등 보조기관의 직급과 실·과·소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군 본 청

제3조(실·과의 설치) ①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총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건설도시과를 둔다.

②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기획감사실장

- 가. 군 행정전반의 종합기획 및 통제
- 나. 기본운영계획수립과 심사·분석
- 다. 예산편성 및 운영
- 라. 경영수익사업 추진
- 마. 지방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 행위
- 바. 군 행정의 감사
- 사. 공무원의 비위조사

- 아. 법제 및 소송업무
- 자. 의회운영 지원
- 차. 지역경제 정책 기획 및 조정
- 카. 해외시장 및 통상에 관한 업무
- 타. 노정에 관한 업무
- 파. 그밖의 기획감사업무 및 경제통상업무에 관한 사항

2. 총무과장

- 가. 보안업무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 나. 직제, 정·현원관리, 인사
- 다. 복무단속
- 라. 공무원 교양과 복리
- 마.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
- 바. 행정구역 조정
- 사. 사무관리 개선
- 아. 선거 및 국민투표
- 자. 문서수발 통제 및 편찬관리
- 차. 민방위계획 및 경방계획 수립
- 카.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동원
- 타. 의용 소방대 지원에 관한 사항
- 파. 민방공계획 수립
- 하.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 거. 민방위 교육훈련 및 계몽
- 너. 전시 병역동원에 관한 사항
- 더. 병무업무
- 러.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 머.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추진
- 버. 각종 통계작성 및 보고
- 서. 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항
- 어. 통신시스템 운영 관리

6 (제88회 - 본회의 제3차부록)

저. 그 밖의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종합민원처리과장

가.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청구민원의 즉결처리

다. 행정안내 및 민원상담

라. 민원사항의 열람

마. 민원업무의 연구 및 발전

바. 담배소매인 지정

사. 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감독

아. 운수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자. 지적업무의 기획 및 조정

차. 지적민원 처리

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업무

타. 지적장비 운영 및 관리업무

파. 토지분할 처리업무

하. 지적공부 보존관리

거. 이동지 검사 및 정리

너.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더. 건축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처리 업무

러. 국민주택 및 주택자금 관리

머. 주택건설 및 건축사, 건축업자 감독

버. 농촌주택개량

서. 취락구조 개선

어. 불법건축물 단속

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처. 주택설계도서 및 자재보급등 주택행정

커. 그 밖의 민원봉사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재무과장

가.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국세위탁 징수

- 나. 세외수입 징수
- 다.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
- 라. 물품구입 및 출납보관
- 마. 군 금고의 감독
- 바. 공채, 국채, 금융
- 사.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 아. 영선에 관한 사항
- 자. 과세시가조사
- 차. 기부금 및 성금 운용관리
- 카. 외국인 토지관리 취득업무
- 타. 부동산 중개업 업무
- 파. 토지규제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하.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 거. 토지평가위원회
- 너. 그 밖의 재무업무에 관한 사항

5. 문화체육과장

- 가. 공보, 문화 및 체육청소년의 종합계획 수립시행
- 나. 여론조사 및 정보수집 분석
- 다. 언론 공보자료의 수집 편찬
- 라. 군정 홍보자료수집 및 홍보
- 마.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
- 바. 문화재의 보존관리
- 사. 출판, 전통사찰 및 향교관리
- 아. 예술·문화단체의 지도 육성
- 자. 관광선전 및 개발
- 차. 공보매개체의 보급 육성
- 카. 해외교포와의 유대강화
- 타.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 파. 체육진흥과 청소년에 관한 사항

8 (제88회 - 본회의 제3차부록)

하. 체육업무

거. 청소년육성 계획 수립

너. 그 밖의 공보·문화 체육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과장

가. 구호, 후생, 노동대책

나. 주민의료보호 및 지역의료보험조합 지도·감독

다. 가정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라. 부녀아동복지법인시설의 지도·감독

마.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

바. 부녀자의 직업보도

사. 윤락여성의 선도보호

아. 아동복지 증진

자. 장애인복지 증진

차. 부녀아동상담 및 상담소 운영 지도·감독

카. 고아, 기아, 부랑아, 정신박약아의 보호

타. 노인복지 대책

파.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

하. 새마을사업종합추진

거. 새마을지도자 관리

너. 생활환경 개선

더. 자연보호에 관한 업무

러. 바르게살기운동업무

머. 광고물의 설치허가 및 지도단속

버. 새마을국민운동업무

서. 그 밖의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호과장

가.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나. 환경영향 평가

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 라. 분뇨수집 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 지도·감독
- 마. 쓰레기종량제사업 추진
- 바. 청소업무
- 사. 위생업소의 인·허가 및 신고업무와 지도·감독
- 아. 하수도 관리
- 자. 지하수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차. 그 밖의 환경보호 및 위생에 관련된 사항

8. 산업과장

- 가. 농정 및 축산, 산림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 나.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및 농업기반조성사업
- 다. 농업금융
- 라. 농업소득개발사업
- 마. 정부양곡수급조절
- 바. 양곡수매 및 가공업자 지도·감독
- 사.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아. 식량작물 증산·장려
- 자. 특용 및 원예작물에 관한 사항
- 차.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판로개척
- 카. 가축의 증식, 개량, 공수의 감독
- 타. 축산단지 조성 및 가축방역 지도,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 파. 자급사료 증산지도, 수급조절
- 하. 내수면 부정어업 단속
- 거. 어선등록 및 관리
- 너. 임야내 치산계획의 수립
- 더. 양묘 및 조림사업 시행·지도
- 러. 사방사업
- 머. 임업단체 지도·감독
- 버. 임업기술 개량보급
- 서. 산불예방에 관한 사항

10 (제88회 - 본회의 제3차부록)

어. 임산물 수급조절 및 벌채

저. 산림보호 및 부정임산물 단속

처. 야생조수보호 및 수렵단속

커. 가로수 식재관리

터. 전국토의 공원화운동 추진

퍼. 그 밖의 농정 및 축산, 산림업무에 관한 사항

9. 건설도시과장

가. 건설공사용 자재 및 건설기계 관리

나. 도시계획의 입안사항

다. 방재종합계획 수립

라. 하천의 보전관리

마. 토지개량공사의 조사측량

바. 농업·생활용수 개발

사. 경지정리사업

아. 하천골재 수급계획 및 채취허가

자. 공작물설치허가

차. 도로정비

카. 농업기반조성

타. 도시건설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시

파. 개발제한구역관리

하. 건설사업용 용지매수

거. 도시계획 및 토지구획정리 사업

너. 지방산업단지조성

더. 도시공원개발 유지관리

러. 소도읍개발사업

머. 지역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시행

버. 재해대책본부운영

서. 건설기술심의회

어.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응급대응체제 구축

저. 재난대비 물자, 자원, 장비파악 및 동원계획 수립
처. 재난대비 교육, 훈련, 홍보
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터. 그 밖의 건설도시행정에 관한 사항

제3장 직 속 기 관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4조(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소장 등) ①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소관사무) ①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7조(설치)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센터의 위치는 교령읍 연조리 553번지에 둔다.

제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2 (제88회 - 본회의 제3차부록)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2. 농업단체,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 육성·지도
3. 식량작물 우량품종보급 및 기술지도
4.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약용작물 재배기술 지도
5. 지역 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
6. 농업인 교육 및 지도
7.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농업인상담소를 둘 경우 농업인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사 업 소

제11조(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군환경위생사업소

- 가. 사업소운영 및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위생처리장 종합계획 수립 및 예산회계, 물품관리
- 나. 일반쓰레기 매립과 복토계획의 수립 시행
- 다. 침출수 처리 및 유지관리
- 라. 매립장 관리 및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 마. 계량시설운영 및 처리비 부과징수, 폐기물 성상 검사
- 바. 매립장내 안전시설 관리와 출입차량 및 인원통제
- 사. 매립장내 소각처리 및 유지관리
- 아. 분뇨의 위생적 처리

- 자. 분뇨의 위생적 처리방법 연구
 - 차. 사업소내 시설물의 유지관리
 - 카. 그 밖에 쓰레기매립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고령군수도사업소
- 가. 사업소운영 및 수도관련 종합계획,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 나. 상수도사업 설계 및 시공 지도·감독
 - 다. 개인 급수전 설치허가 및 시공 감독
 - 라.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도 감독
 - 마. 상수도 요금개선 및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 바. 각종 시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사. 정수의 생산공급 및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 아. 가압 펌프장 유지관리
 - 자.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 차. 상수도 종합개발계획 수립·시행
 - 카. 원수와 정수의 수질관리
 - 타. 간이상수도 관리
 - 파. 약품 시험실 유지관리
 - 하. 수질시험 분석에 관한 사항
 - 거. 수도행정에 관한 사항

제5장 읍 면

제14조(설치) ①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6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14 (제88회 - 본회의 제3차부록)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4조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고령군보건소	고령군 고령읍 연조리 563-3	고령군 일원
고령군보건소 덕곡지소	고령군 덕곡면 예 리 409	덕곡면 일원
고령군보건소 운수지소	고령군 운수면 봉평리 811-4	운수면 일원
고령군보건소 성산지소	고령군 성산면 어곡리 228-3	성산면 일원
고령군보건소 다산지소	고령군 다산면 평리리 273-6	다산면 일원
고령군보건소 개진지소	고령군 개진면 개포리 238	개진면 일원
고령군보건소 우곡지소	고령군 우곡면 도진리 199	우곡면 일원
고령군보건소 쌍림지소	고령군 쌍림면 귀원리 206-3	쌍림면 일원
고령읍 저전리 보건진료소	고령군 고령읍 저전리 470	중화1, 2리. 저전리. 내상리. 신동리
고령읍 내곡리 보건진료소	고령군 고령읍 내곡리 528-4	내곡1, 2, 3리. 외1, 2리
성산면 용소리 보건진료소	고령군 성산면 용소리 301	대흥리. 용소리, 상용리
다산면 벌지리 보건진료소	고령군 다산면 벌지리 353-8	벌지1, 2리. 나정1, 2리 송곡1, 2리
다산면 노곡리 보건진료소	고령군 다산면 노곡리 1243	노곡리
개진면 옥산리 보건진료소	고령군 개진면 옥산리 532-1	옥산1, 2리. 구곡1,2리 오사1, 2리
개진면 진 촌 보건진료소	고령군 개진면 생 리 78-4	부1, 2리. 인안1, 2리 생리
우곡면 대곡리 보건진료소	고령군 우곡면 대곡리 763-3	대곡1, 2리. 사전리
우곡면 봉산리 보건진료소	고령군 우곡면 봉산리 1065-1	봉산1, 2리. 포1, 2리 객기리
쌍림면 신촌리 보건진료소	고령군 쌍림면 신촌리 536-1	신촌리. 산주리. 백산리 하거1, 2리
쌍림면 월막리 보건진료소	고령군 쌍림면 월막리 96	월막리. 용1, 2리 고곡2리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1조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고령군환경위생사업소	고령군 쌍림면 신곡리 산 128-2
고령군수도사업소	고령군 고령읍 장기리 331-3